

서울특별시 금천구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미 의원 발의]

의안번호	2351
------	------

발의일자 : 2023. 5. 31.

발 의 자 : 고성미 의원

찬 성 자 : 엄셋별 의원

1. 제안이유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사유에 범죄피해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추가하여 각종 범죄피해로부터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등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및 제3조).

나. 위기상황 사유에 「범죄피해자 보호법」 상의 범죄피해자로 확인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추가함(안 제3조제17호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4조 등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제5조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현행 조례 : 별도 첨부

2) 신·구조문 대비표 : 별도 첨부

3) 입법예고 : 2023. 6. 1. ~ 6. 7.

서울특별시 금천구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를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제6호”를 “제2조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17호를 제18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 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위기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위 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위기상황의 기준) 「긴급복 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 다) 제2조제6호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를 말한다.</p> <p>1. ~ 16. (생 략)</p> <p><신 설></p> <p>17. (생 략)</p>	<p>제1조(목적) ----- 「긴급복 지지원법」 제2조제8호----- ----- ----- ----- -----.</p> <p>제3조(위기상황의 기준) ----- ----- ---- 제2조제8호----- ----- -----.</p> <p>1. ~ 16. (현행과 같음)</p> <p>17.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 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려 운 경우. 다만, 동일한 범죄피 해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 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p> <p>18. (현행 제17호와 같음)</p>

현행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긴급복지지원 조례

[시행 2016. 1. 5.]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841호, 2016. 1. 5.,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위기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복지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4. “통합사례관리대상자”란 구청장이 탈빈곤지원 및 빈곤예방을 위해 관리하는 저소득주민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의 기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원환자·치매노인·알코올 중독자·정신질환자 등의 간병·보호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또는 출산 후 6개월 이내인 사람으로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취학 전 아동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장애아동 등 요보호아동은 연령기준 미적용, 종일제 어린이집 이용 가구는 제외한다.
4. 주 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폐가·천막집·다리 밑·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6.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알코올·도박중독·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0조에 따라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기준 초과로 인하여 급여가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써 생계가 어렵다고 동장이 추천하는 경우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한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실직·폐업 등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으로서 수도·가스 등 사용

료를 체납하여 그 공급이 중단된 경우

11. 생계가 어려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12. 실직·폐업 등의 사유로 월 임대료 50만원 이하의 월세 등 주택(임시거주지 포함) 임차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한 가구로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금융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

13.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과다 채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3개월 이상 채무를 이행함에 따라 생계가 어려운 경우

15. 자살고위험군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소·정신건강증진센터·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에서 생계가 어렵다고 인정하여 추천하는 경우

16.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중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 부서에서 추천하는 경우

17.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 한다.

부 칙 (제841호, 201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327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1. 18., 2012. 10. 22., 2014. 12. 30., 2018. 12. 11.>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 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긴급지원의 지원대상 및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지원 종류·내용·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긴급지원사업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

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구호·보호 또는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5. 28.]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 2017. 3. 14.] [법률 제14583호, 2017. 3. 14., 일부개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4.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애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 “장애”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중상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

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30.>